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가합50664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용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관수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제주시 D 외 1필지에서 공동주택 3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시행사이다.

나. C은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입금”이라 함은 C의 분양수입금, 대출금, 대출금 이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C에 귀속되는 금원 전부를 말한다.

③ “자금관리”라 함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수입금의 수납관리를 말한다.

④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제3조(권한위임)

C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1. 수입금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과 자금의 수납 및 관리

다. 피고는 2016. 9. 2.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자금관리계좌로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272,8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C이 원고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2개 호실(G호, H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21. C로부터 위 2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대금 완납증을 교부받았고, 2019. 10. 25. 이 사건 대여금을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야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2개 호실(G호, H호)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설명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만 위 2개 호실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도 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점을 착오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착오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급부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급부가 함께 이루어진 점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거나 피고가 위 흠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윤중렬, 판사 김성준